

면대약국, 사무장약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 건강보험공단의 재량행위 행사 범

위: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



(1) 사무장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될 경우, 어차피 가입자 등이 정상적인 약국에서 약제를 제공받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가 사실상 초과이득을 얻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감액·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무장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가입자 등에게 약제를 제공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인적·물적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취득한 '순이익'도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고, 대법

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과 실 운영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i)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등), (ii)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iii)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iv)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v) 그 밖의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사무장 약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건강보험공단의 감액 기준 및 문제점

감경항목		감액비율(%)
의료기관(약국)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개설명의인	15% 이내
	실 운영자	5% 이내
요양급여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		10% 이내
요양급여비용 액수		5% 이내
의료기관(약국)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의 여부	개설명의인	5% 이내
	실 운영자	3% 이내
요양급여 내용 [자격을 갖춘 의료인(약사)의 시행 여부·과잉진료 여부]		4% 이내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8% 이내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		3% 이내

- 위 재량준칙은 감액·조정 대상을 개설명의인과 실 운영자에 대한 환수결정액 중 공단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 중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은 감액·조정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문언상 요양기관에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을 구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 운영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도 공단의 재량에 속한다.

(4) 사무장 약국이 약사법 규정에 위반하여 개설되었더라도, 면허를 갖춘 약사를 통해 조제한 약제를 제공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피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약제를 제공받은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은 사무장 약국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본질이 있다. 사무장 약국이 저지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벌을 부과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

자격증분쟁, 면허대여, 2중개설,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략적총괄대응, 실무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